

수원고등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139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1399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2가단1245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구

변론 종결 2024. 10. 25.

판결 선고 2024. 11. 1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2가단124558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에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C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¹⁾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부분의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친다.
- 3면 5행의 "피고 회사"를 "C"로 고친다.
- 4면 10행의 "2014다225809"를 "2014다225809 판결"로 고친다.
- 7면 6행의 "피고들"을 "피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제기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 대한 대여채권자 또는 보증채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제기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재판장판사강은주

판사이승철

판사박해빈

1) 제1심판결의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금청구' 부분(제1심판결의 2면 내지 7면 부분)

2)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4. 11. 12.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녹취록을 통하여 보증채무의 완제 주장과 소송신탁 주장을 보완하고 있으나, 그 녹취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채무가 완제되었다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제기가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의 쌍방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변론재개 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